

#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왕정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635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9일  
발 의 자: 왕정순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김 경, 김규남, 김성준,  
김지향, 남창진, 유정인,  
이숙자, 이영실, 이원형,  
임규호, 임종국, 정준호,  
최민규, 한 신 의원(14명)

#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현행 조례를 통해 여성기업의 활성화에 노력해 왔으나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및 우대사항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해 적극적인 여성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.
-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여성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,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시책 추진사항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포상 규정을 신설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여성기업에 차별적 관행 및 시정 개선에 대해 명확히 함(안 제5조).
- 나. 여성기업 우대 및 지원사업 구체화함(안 제9조).
- 다. 공공기관 평가 시 여성기업 시책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0조).
- 라.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(안 제13조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

##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그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속하게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”를 “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5천만원”을 “1억원”으로 한다.

①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.

1.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자
  2.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
  3.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사업
-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여성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,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1조, 제12조 및 제14조로 하고, 제10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공공기관의 평가 반영)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,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3조(포상)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차별적 관행의 시정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5조(차별적 관행의 시정) ① (현 행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그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속하게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</p>
<p>제9조(여성기업에 대한 지원) &lt;신 설&gt;</p> <p>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</p>	<p>제9조(여성기업에 대한 지원) ①</p> <p>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자</li> <li>2.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</li> <li>3.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사업</li> </ol> <p>② ----- 여성기업 활성화를</p>

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~ 9. (생략)

<신설>

②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·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.

<신설>

제10조·제11조 (생략)

<신설>

제12조 (생략)

위하여 필요한 경우 -----  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여성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-----  
-----  
----- 1억원 -  
-----  
-----.

제10조(공공기관의 평가 반영)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,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1조·제12조 (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)

제13조(포상)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.

제14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